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94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4. 10.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통합하는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보전방안을 마련”을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수정함.

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3조로 수정함.

다. 제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으로 수정함.

라. 제9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수정함.

마. 제11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0조**”로 수정함.

바. 제16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함.

사. 제17조(중전의 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보전방안을 마련”을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2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u>설치하여야 하며</u>,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u>보전방안을 마련</u>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u>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 · 경찰서 · 고용지원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u></p> <p>2. <u>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설치할 수 있으며,</u> ----- <u>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u><삭 제></u></p>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삭 제>

<삭 제>

<삭 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표자

<삭 제>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에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

1. (개정안과 같음)

2. -----
----- **외국인주**
민 및 다문화가족 -----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4.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④·⑤ (생략)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제17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0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⑤ (개정안과 같음)

⑥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제9조(협회의 기능)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제10조 -----

-----.

제12조 ~ 제15조 (개정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
----- 제15조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 제28조 (생략)

음)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 제23조 (개정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